



2024.4.29.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95호

##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



유희수(연구지원실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 95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4년 4월 29일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Contents

01

0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2

04

상임위별 미래의제 선정

03

09

상임위별 미래의제 분석



## 연구진

---

### ■ 내부연구진

유희수 연구위원(연구책임)  
김태경 부연구위원  
여영준 부연구위원  
이승환 연구위원  
정혜윤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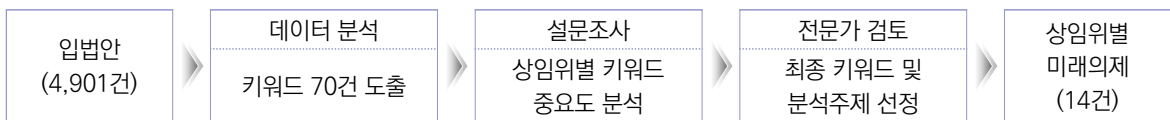
### ■ 외부연구진

김나정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  
김용훈 교수(상명대학교)  
김은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마상진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병오 전문위원(한국국방연구원)  
유재국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이미연 예산정책연구관(국회예산정책처)  
이지연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인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채지용 수석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요약

### ■ 상임위별 미래의제 선정

- 입법안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상임위별 미래의제 총 14건을 선정하였음



#### 〈상임위별 최종 키워드〉

| 위원회 | 키워드          | 위원회  | 키워드       |
|-----|--------------|------|-----------|
| 법사위 | 감사원 직무감찰     | 문체위  | 저작권 보장·보호 |
| 기재위 | 국가전략기술       | 농해수위 | 농어촌 청년    |
| 교육위 | 학교폭력         | 산자위  | 신재생에너지    |
| 과방위 | 원자력 안전       | 복지위  | 마약류 방지    |
| 외통위 |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 환노위  | 근로시간      |
| 국방위 | 국방 혁신        | 국토위  | 건축물 안전    |
| 행안위 | 어린이 교통안전     | 여가위  | 청소년 지원    |

#### 〈상임위별 미래의제〉

| 위원회 | 주제명                               | 위원회  | 주제명                                   |
|-----|-----------------------------------|------|---------------------------------------|
| 법사위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권한           | 문체위  |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
| 기재위 |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농해수위 |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                |
| 교육위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과제           | 산자위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형 에너지시스템                |
| 과방위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개편 방안       | 복지위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사법적 접근법에 대한 주요국 사례 및 향후 과제 |
| 외통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 환노위  | 미래사회의 변화와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                 |
| 국방위 |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선진화         | 국토위  |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             |
| 행안위 | 미래세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버스 운전자 정책 | 여가위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변화와 미래 과제              |

### ■ 상임위별 미래의제 분석

- 총 14건의 미래의제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였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제언하였음

## 0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상임위의 입법 관련 논의 과정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중장기적 관점의 분석과 검토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상임위는 국회 기능의 중심 단위로서, 예결산심사, 국정감사, 입법이 전부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심사가 각 상임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입법은 정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입법 현안 중에서 많은 이슈들이 미래에 다양한 경로와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상임위를 구성단위로 하는 연구 보고서들이 국회 소속기관에 의해 꾸준히 발간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상임위별 '예산안 분석'과 '결산 분석'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상임위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등은 상임위 수요에 따라 각 기관의 미션 및 해당 분야에서 기관이 지닌 역량과 강점을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음
  - 그 결과, 보고서 시리즈가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부처 공무원과 관련 정책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읽혀지고 있으며, 정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국회 내 주요 정책고객인 국회의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이 해야 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중장기 미래 정책연구의 결과물을 국회의원과 상임위에 적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1) 입법안을 대상 데이터 분석, 2)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3)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 검토의 과정을 거쳐 상임위별 미래의제를 선정한 후, 각 미래의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미래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의 입법안을 분석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미래의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 의제를 찾기 위해서임
  - 이를 위하여 입법안을 데이터 분석의 1차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의 과정을 거쳐 그 선정 범위를 좁혔음
- 입법안 심사 시 대부분 현안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나, 다수의 법률안들이 제·개정을 통하여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정책 제언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상임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입법안 관련 이슈와 쟁점들을 살펴보면, 미래의제가 아닌 현안, 그리고 현안이 아닌 미래의제는 드물고, 대부분 현안이면서 중장기 미래의제로서 논의 사항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 02

## 상임위별 미래의제 선정

- 본 연구에서는 1) 입법안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고, 2) 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3)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상임위별 미래의제 분석주제를 최종 선정하였음

### 1. 데이터 분석

- 상임위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음
  -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 분석 방법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하나,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1차 모집단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분석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안된 제·개정 법률안 중 2023년 2월 28일 기준 15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4,901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국회운영위와 정보위는 위원회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부개정법률안이 4,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정안이 222건, 전부개정법률안이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음
  - (분석 방법) 분석 대상인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조문 관련 문장(제O조O항), 조사, 수식어 등에 대한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한 후,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통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였음
    - 전체 키워드 중 2개 이상의 법률안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상임위별 최대 5개까지 정리함
- 데이터 분석 결과, 주요 키워드로 외통위는 3개, 법사위, 국방위, 여가위는 각각 4개씩, 나머지 위원회는 5개씩 키워드가 최종 도출되었음([표 1] 참고)

표 1 상임위원별 주요 키워드(설문조사 전)

| 위원회 | 키워드             | 의안수 | 위원회  | 키워드           | 의안수 |
|-----|-----------------|-----|------|---------------|-----|
| 법사위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 25  | 정무위  | 개인정보 보호       | 12  |
|     | 가정폭력범죄          | 13  |      | 보이스피싱         | 12  |
|     | 감사원 직무감찰        | 6   |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 감독 | 7   |
|     | 외국인 등록          | 3   |      |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 5   |
| 기재위 |                 |     |      | 선불전자지급수단      | 5   |
|     | 국가전략기술          | 14  | 교육위  | 교육환경          | 13  |
|     | 종합부동산 과세표준      | 10  |      | 학교폭력          | 9   |
|     | 중소기업 근로자        | 5   |      | 특수학교·장애인교육    | 8   |
|     | 벤처기업 특례         | 3   |      | 현장실습 안전       | 6   |
|     | 공공기관장 임기        | 3   |      | 유치원 학급        | 4   |
| 과방위 | 통신자료 제공·요청      | 10  | 외통위  |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 8   |
|     | 메타버스            | 6   |      | 재외국민          | 4   |
|     | 모바일콘텐츠 마켓       | 5   |      | 국제개발협력        | 3   |
|     | 원자력 안전          | 3   |      |               |     |
|     | 양자기술            | 2   | 행안위  | 지역축제 안전관리     | 12  |
| 국방위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 7   |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 7   |
|     | 보안업무규정          | 4   |      | 대통령 관저        | 6   |
|     | 첨단무기체계          | 3   |      | 어린이 교통안전      | 5   |
|     | 국방 혁신           | 2   |      | 선거운동 뎀페이크     | 4   |
| 문체위 | 문화재 보호          | 23  | 농해수위 | 반려동물 보호       | 6   |
|     | 장애인 예술문화활동      | 13  |      | 수산자원 보호       | 6   |
|     | 저작권 보장·보호       | 7   |      | 농어촌 청년        | 5   |
|     | 문화예술인 권리        | 6   |      | 기후변화 피해       | 4   |
|     | 문화예술 산업         | 2   |      | 동물학대 금지       | 3   |
| 산자위 | 신재생에너지          | 18  | 복지위  | 감염병 예방·피해보상   | 6   |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7   |      | 아동학대 피해       | 5   |
|     | 취약계층 에너지        | 6   |      | 장애인 지원 확대     | 4   |
|     | 충전시설 설치         | 6   |      | 마약류 방지        | 4   |
|     | 방사성폐기물 부지       | 4   |      | 자살            | 3   |
| 환노위 | 노동조합            | 15  | 국토위  | 정비사업          | 18  |
|     | 육아휴직 보장         | 11  |      | 건축물 안전        | 10  |
|     | 최저임금            | 7   |      | 교통약자          | 8   |
|     | 부당노동행위          | 6   |      | 공동주택 층간소음     | 6   |
|     | 근로시간            | 5   |      | 건축물 침수        | 6   |
| 여가위 | 성폭력 대책          | 18  |      |               |     |
|     | 청소년 지원          | 13  |      |               |     |
|     | 가정폭력            | 6   |      |               |     |
|     | 한부모가족           | 3   |      |               |     |

## 2.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 ■ 상임위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슈인 동시에 중장기 미래의제를 도출하여야 함

-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보된 상임위별 주요 키워드는 상임위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로서 도출된 결과임
- 따라서 주요 키워드들을 통하여 시의성 높은 주제들이 탐색될 수는 있으나, 해당 주제들이 전부 미래의제로서 의미를 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 키워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이슈와는 관련이 낮고 현안에 가까움

### ■ 본 연구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대상) 설문조사는 상임위별 미래의제 후보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인식하는 미래의제로서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국회의장을 제외한 현원 기준 298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 방법) 설문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문지를 최대한 간단히 구성하였고, 의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음
- (설문지) 상임위별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3~5지 선다형으로 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선택지 중 1개 또는 2개를 선택하도록 제시하였음
  - 키워드만 문항 선택지로 제시될 경우 응답자가 키워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응답자에게 키워드에 관한 이슈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선택지에 키워드별 주요 내용을 함께 제공하였음

### ■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설문 총 315건 중 179건(56.8%)의 응답을 확보하였으며, 선택지 중 2개를 선택한 응답의 경우 각각 0.5씩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음(표 2) 참고)

표 2 상임위별 주요 키워드(설문조사 후)

| 위원회 | 키워드             | 점수       | 위원회 | 키워드                  | 점수         |
|-----|-----------------|----------|-----|----------------------|------------|
| 법사위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 2        | 정무위 | 개인정보 보호              | 3.5        |
|     | 가정폭력범죄          | 0.5      |     | 보이스피싱                | 3          |
|     | <b>감사원 직무감찰</b> | <b>3</b> |     | <b>금융감독위원회 은행 감독</b> | <b>6.5</b> |
|     | 외국인 등록          | 0.5      |     |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 2          |
|     |                 |          |     | 선불전자지급수단             | 3          |
| 기재위 | <b>국가전략기술</b>   | <b>6</b> | 교육위 | 교육환경                 | 2.5        |
|     | 종합부동산 과세표준      | 4.5      |     | <b>학교폭력</b>          | <b>3</b>   |
|     | 중소기업 근로자        | 4        |     | 특수학교·장애인교육           | 2          |
|     | 벤처기업 특례         | 1        |     | 현장실습 안전              | 1          |
|     | 공공기관장 임기        | 0.5      |     | 유치원 학급               | 0.5        |
| 과방위 | 통신자료 제공·요청      | 3        | 외통위 | <b>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b>  | <b>4</b>   |
|     | 메타버스            | 2        |     | 재외국민                 | 1          |
|     | 모바일콘텐츠 마켓       | 1.5      |     | <b>국제개발협력</b>        | <b>4</b>   |
|     | <b>원자력 안전</b>   | <b>4</b> |     |                      |            |
|     | 양자기술            | 2.5      |     |                      |            |

| 위원회 | 키워드              | 점수       | 위원회  | 키워드             | 점수         |
|-----|------------------|----------|------|-----------------|------------|
| 국방위 | 군용비행장·군사경장 소음피해  | 3        | 행안위  | 지역축제 안전관리       | 2.5        |
|     | 보안업무규정           | 0.5      |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 1          |
|     | 첨단무기체계           | 2.5      |      | 대통령 관저          | 1.5        |
|     | <b>국방 혁신</b>     | <b>3</b> |      | <b>어린이 교통안전</b> | <b>3</b>   |
|     |                  |          |      | 선거운동 뎀페이크       | 0          |
| 문체위 | 문화재 보호           | 0.5      | 농해수위 | 반려동물 보호         | 1          |
|     | 장애인 예술문화활동       | 2        |      | 수산자원 보호         | 2          |
|     | <b>저작권 보장·보호</b> | <b>6</b> |      | <b>농어촌 청년</b>   | <b>3.5</b> |
|     | 문화예술인 권리         | 2.5      |      | 기후변화 피해         | 2.5        |
|     | 문화예술 산업          | 1        |      | 동물학대 금지         | 0          |
| 산자위 | <b>신재생에너지</b>    | <b>5</b> | 복지위  | 감염병 예방·피해보상     | 3          |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4        |      | 아동학대 피해         | 1.5        |
|     | 취약계층 에너지         | 1.5      |      | 장애인 지원 확대       | 2.5        |
|     | 충전시설 설치          | 1.5      |      | <b>마약류 방지</b>   | <b>4</b>   |
|     | 방사성폐기물 부지        | 4        |      | 자살              | 3          |
| 환노위 | 노동조합             | 2        | 국토위  | <b>정비사업</b>     | <b>6</b>   |
|     | 육아휴직 보장          | 2        |      | <b>건축물 안전</b>   | <b>6</b>   |
|     | 최저임금             | 1        |      | 교통약자            | 2          |
|     | 부당노동행위           | 2        |      | 공동주택 층간소음       | 1.5        |
|     | <b>근로시간</b>      | <b>3</b> |      | 건축물 침수          | 1.5        |
| 여가위 | 성폭력 대책           | 2.5      |      |                 |            |
|     | <b>청소년 지원</b>    | <b>3</b> |      |                 |            |
|     | 가정폭력             | 1.5      |      |                 |            |
|     | 한부모가족            | 1        |      |                 |            |

■ 설문조사에 따른 상임위별 1순위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음([표 3] 참고)

표 3 상임위별 1순위 키워드 관련 주요 법률안

| 위원회 | 키워드           | 주요 법률안                           |
|-----|---------------|----------------------------------|
| 법사위 | 감사원 직무감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무위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 감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 기재위 | 국가전략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교육위 |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과방위 | 원자력 안전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외통위 |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국방위 | 국방 혁신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 행안위 | 어린이 교통안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 위원회  | 키워드       | 주요 법률안                                    |
|------|-----------|-------------------------------------------|
| 문체위  | 저작권 보장·보호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 농해수위 | 농어촌 청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산자위  |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복지위  | 마약류 방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환노위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 국토위  | 건축물 안전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 여가위  | 청소년 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3. 분석주제 선정 및 분석

- (분석주제 선정)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각 키워드 관련 쟁점을 검토한 후 미래의제로서 총 14개 분석주제를 최종 선정하였음
  - 예를 들어 문체위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왜 미래의제로 ‘저작권 보장·보호’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후 ‘생성시가 가져온 창작 방식의 변화 및 저작권 이슈의 부상’이라는 주제를 도출하였음
  - 한편 키워드에 대한 검토 결과, 정무위(금융감독위원회 은행 감독)의 경우 미래의제보다는 현안 이슈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주제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 (미래의제 분석) 내부 연구진(5인)의 전문분야 외에 추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국회소속기관 5인, 외부 5인)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음
  - 먼저 각 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였음
    - 이때 각 주제별 특성과 입법 정책에 대한 접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 방법(문헌, 법률안, 외국사례, 정책 분석 등)을 활용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또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제언하였음
    - 이때 정책 제언은 국회의 연구기관으로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되,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연구 주체로서 미래 시나리오, 전략 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음

## 03

## 상임위별 미래의제 분석

1. 법제사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권한<sup>1)</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감사원 직무감찰의 의의)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으로서 그 주요한 권한 중 하나로 직무감찰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으며, 직무감찰은 피감사기관 및 소속 구성원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과 평가임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감찰 대상 관련 쟁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른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반면,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이 직무감찰의 대상 공무원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선관위, 특히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의 가능성 및 필요성)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설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숙한 선거절차 진행 등은 위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정 또는 부당의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직무감찰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 정책 제언

- 정책 제언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직무감찰 대상 명시화(1안), 감찰 제외 사항 규정(2안),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 제외(3안)) 제시

표 4 | 현행 「감사원법」 및 개정안

| 현행법                                                                                           | 1안                                                                                                              | 2안                                                 | 3안                                                 |
|-----------------------------------------------------------------------------------------------|-----------------------------------------------------------------------------------------------------------------|----------------------------------------------------|----------------------------------------------------|
|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br>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br>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및 <b>선거관리위원회</b> 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br>1.~4. (생략) |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br>1.~4. (생략) |

1) 김용훈 교수(상명대학교 법학과)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11~36 참고

| 현행법                                                                             | 1안                                                                              | 2안                                                                              | 3안                                                                      |
|---------------------------------------------------------------------------------|---------------------------------------------------------------------------------|---------------------------------------------------------------------------------|-------------------------------------------------------------------------|
| 2.~4. (생략)                                                                      | 2.~4. (생략)                                                                      |                                                                                 |                                                                         |
| ② (생략)                                                                          | ②~③ (생략)                                                                        | ②~③ (생략)                                                                        | ② (생략)                                                                  |
|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br>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br>공무원은 제외한다.                               |                                                                                 |                                                                                 |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br>법원·헌법재판소 및 <b>선거관리<br/>위원회</b> 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br>외한다. |
|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br>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br>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br>수 없다.<br>1.~2.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br>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br>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br>수 없다.<br>1.~2.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br>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br>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br>수 없다.<br>1.~2. (생략) | ④ (생략)                                                                  |
|                                                                                 | 3. <u>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br/>터 신속한 선거사무처리에<br/>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br/>사항</u>              | 3. <u>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br/>터 신속한 선거사무처리에<br/>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br/>사항</u>              |                                                                         |

## 2. 기획재정위원회: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sup>2)</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우리나라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전략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더불어 이들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 최근 해외 주요국들도 전략기술 분야에 타 기술 부문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차원으로 전략기술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미국은 2021년 6월 반도체 관련 투자 등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Facilitating American-Built Semiconductor Act」를 발의했고, 일본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을 목표로 하는 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치를 마련했으며, 중국은 반도체 칩 생산 공정별 법인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국가 발전전략 분야에 대한 기업 연구개발비의 75%, 기술형 중소기업의 경우 10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 정책 제언

- (한시적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원)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조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제도의 일몰 시한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제도 설계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설계와 제도화가 필요함
- (조세제도 효율성과 세수효과를 통한 건전재정 간 균형) 최저한세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세수가 감소하거나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유인효과 증대와 다양한 외부효과 등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제고될 경우 세수감소분을 상쇄하는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의 범위를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국가전략기술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지원)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별 지원을 격차가 큰 수준임
  - 기업 규모별 차등적 지원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여 혁신성을 기준으로 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을 확립해 나가는 방안, 오픈이노베이션형 R&D 프로젝트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협력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R&D 지원 등 다양한 보원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R&D 예산 감액으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와 R&D 직접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의 혁신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음
  -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R&D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함께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여영준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37~62 참고

### 3. 교육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과제<sup>3)</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정부의 정책과 법률 개정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SNS 등의 발달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졌고,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이 대학 입시와 연계되어 관련한 법적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심의 건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대폭 감소하였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5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심의 건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 현황

(단위: 건, 명)

| 학년도  | 심의 건수  | 피해학생 수 | 가해학생 수 |
|------|--------|--------|--------|
| 2018 | 32,632 | 39,478 | 40,999 |
| 2019 | 31,130 | 40,411 | 41,183 |
| 2020 | 8,357  | 13,425 | 16,129 |
| 2021 | 15,653 | 20,682 | 26,399 |
| 2022 | 23,603 | 26,369 | 33,903 |

자료: 교육부

#### ■ 정책 제언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피해학생의 치유·회복 상담 및 프로그램 실효성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1)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 2)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인력 및 조직, 학교와 교사의 소극적 처리 등 검토, 3) 현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시행 중인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분석이 필요함
- (가해학생 조치 및 선도)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와 함께 선도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 1)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분석하여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2) 가해학생의 특성과 성격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개선, 3)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함
- (학교폭력 정책의 일관성)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1)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특징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2)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등이 필요함

3) 조인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63~90 참고

####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개편 방안<sup>4)</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은 국가의 정책방향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 그리고 세계 각국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필요로 함
-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원자력안전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주요 해외 원전 운영국은 원자력 안전규제에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로 원자력안전 규제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임을 인지하고, 이를 위하여 규제기관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 ■ 정책 제언

- (원안위 지위 격상) 원안위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독자적인 업무영역 내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나, 구조적으로 행정부에 소속된 위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부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음
  - 1) 비상상황 시 유관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면서 최근 정치·외교적으로 뜨거운 논쟁 속에 있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같이 초국경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2) 동시에 전 세계 원전 산업에서 국내 원자력발전 기술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제와 진흥의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함
- (초당파적 전문가 임명) 원안위의 위원 임명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고, 그 결과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원자력 안전규제의 방향도 크게 달라지게 됨. 또한 위원장이 국회 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위의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정도가 낮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음. 더불어 원안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역시 출범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음
  - 1) 원안위가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국회 관여의 폭을 늘리는 방안 검토, 2) 위원장도 청문회의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국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공간 확보, 3)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원안위 업무에만 집중하여 현안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관계기관과의 업무체계 개선) 원안위의 의사결정이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검토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역량 및 권한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1) 원안위 사무처가 KINS 의사결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기술적·전문적으로 제언할 수 있도록 필수 지식 교육 등을 확대하여 인적 역량 강화, 2) 전문적·기술적 분석은 산하기관과 외부 기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더라도 원안위가 적극적인 조정자로서 역할 수행, 3) 원안위와 KINS 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4) 김나정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91~114 참고

## 5.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sup>5)</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2016년 국내 입국 누적 탈북민 3만 명 시대에 들어섰으나, 2010년대 한국사회 내 전체 국민 평균보다 심각한 탈북민들의 자살률, 늘어나는 탈북민 무연고 사망 사건은 탈북민 사회통합 현실에 대한 우려와 정책적 자성을 낳고 있음
- 탈북민들의 사회통합은 탈북민들이 위치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사회적 맥락과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국내 사회 구성 및 통합/갈등의 맥락, 남북관계의 변화 및 수요, 지역 및 국제사회의 이주, 통합 관련 규범, 실천과의 상호작용 등 다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제21대 국회 북한이탈주민 관련 의안 및 처리과정은 탈북 관련 국내 정책담론·인식의 최근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1) 기존연구, 보도 등에서 지적된 구체적 정책 개선, 2) 탈북민 지원 및 사회통합의 이론적 관점, 시각의 전환, 광범한 정책적 방향성 확립 관련 입법 노력이 나타남
- (한국사회에서 탈북민들의 적응 및 통합) 현재 정책이 전제하는 탈북민들의 정착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 관점으로부터 이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한국사회가 탈북민에게 어떤 사회인가를 자문하고, 탈북민들의 사회적 관계망 및 안전망 제공, 삶의 질 추구가 가능한 맥락을 제공하는 방법론 탐색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이주민, 난민으로서 탈북민을 바라보는 프레임) 현재 실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 통합된 한반도 시공간의 권역에서 탈북민들의 특별한 위치를 조명하고, 점진적이고 장기적·단계적인 통합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기여를 찾아낼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 정책 제언

- (단기적 우선순위) 자살률, 정신건강, 소득수준, 교육수준, 의료수준, 소속감, 신뢰 등에서 한국사회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표를 기록하는 탈북민의 사회통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이후 탈북 지형 변화, 탈북민 구성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탈북의 여성화, 젠더적 관점에 기초한 정책적 전환이 일차적으로 요구됨
  - 1) 성범죄로부터 보호, 신변보호담당관, 성평등 교육, 법·인권 교육, 일/가정 균형을 위한 육아 지원, 취업알선 등 성인지적 제도 변화, 2) 현행법상 탈북민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출생 탈북여성 자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법제화, 사회문화적 통합 노력, 3) 외적·경제적 통합뿐 아니라 내적·사회심리적 통합을 위한 공동체 기반 조성, 무연고 고독사, 자살 방지 관련 지자체, 지역시민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중장기적 전략) 한반도 단위에서 상이하고 비대칭적 정치체 공존, 평화의 제도적 디자인, 정체성 문제 관련 정책·연구 담론이 요구됨
  - 1) 한국사회의 이주민, 난민, 장애인, 노인, 여성, 성소수자, 다문화, 노동자,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인권 및 사회통합 정책입법의 진전, 2) 탈북민 통합에서 나아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기본권 신장을 위한 조건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5) 김태경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115~148 참고

## 6. 국방위원회 :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선진화<sup>6)</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국방혁신 4.0」에서 미래 우리 군의 싸우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미래 합동작전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최단기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全) 영역 통합작전”임

표 6 미군의 JADC2 관련 사업 및 주요 내용

| 군종 | 사업명                                    | 주요 내용                                                                     |
|----|----------------------------------------|---------------------------------------------------------------------------|
| 육군 | Project Convergence                    | 지휘관의 빠른 상황인식과 신속한 결심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AI 기능 개발                              |
| 해군 | Project Overmatch                      |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와 통합되는 작전에서 플랫폼, 무기 및 센서를 연결하고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한 무인 시스템 연계         |
| 공군 | Advanced Battlefield Management System | 미래 첨단 전장관리체계로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와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 및 표적획득 데이터를 적시적이고 실행가능한 정보로 변환 |

주: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란 본쟁과 경쟁상황에서 작전적·정보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 파트너와 함께 의사결정을 신속히 행동으로 전환하고 전 영역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지휘결심의 술(術)과 과학으로 모든 영역과 구성군, 임무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확장된 지휘통제 개념  
자료: 저자 작성

- (지능정보기술의 적용) 미래전의 양상에 따라 감시정찰과 타격, 공중·미사일 방어 및 전 영역 작전에서의 우세 확보를 위한 사이버와 전자기전 능력의 상호의존적 운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미군의 1) AI를 통한 다중영역작전 운영개념의 구현, 2)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JADC2 능력의 구현이 좋은 사례임

### ■ 정책 제언

- (통합운영개념의 발전) 적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우위를 통해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 동맹국 및 민간 부문의 파트너가 함께 참여하여 전략환경 및 대중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
- (새로운 기술의 역할에 대한 공동된 이해) 모든 군과 기능 영역의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여 각 전장 영역을 지원하는 국방 차원의 표준화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든 영역에 대한 상호운용성 보장이 필요함
- (전략환경 변화 대응) 한국군과 미군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간의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체계 능력 격차를 해소하고, 도메인 간, 한국군 내, 한국군과 연합군 간 모든 영역에 걸친 상호운용성 보장이 필요함
- (능력 확보를 위한 올바른 접근법의 선택) 군에서 획득한 개혁의 필요성을 식별한 후 계약 후 일선으로의 배치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근본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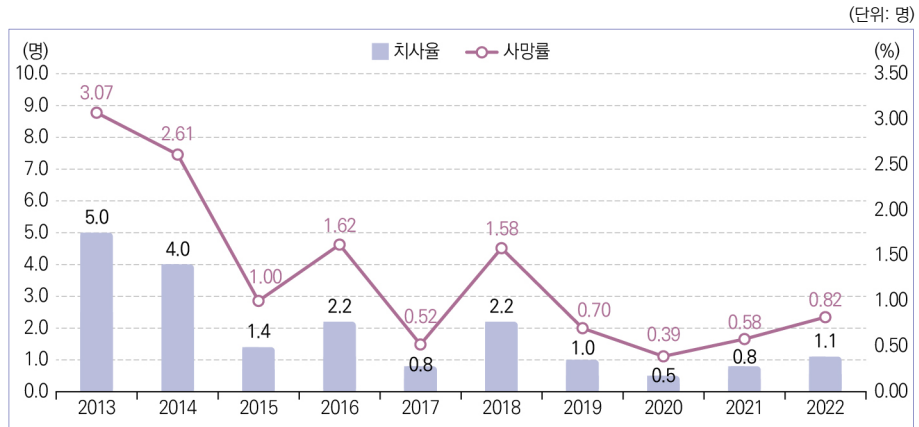
6) 안병오 전문위원(한국국방연구원)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149~170 참고

## 7. 행정안전위원회: 미래세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버스 운전자 정책<sup>7)</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의 치사율 및 사망률)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5.0명에서 1.1명, 3.07%에서 0.82%로 개선되었으나, 2020년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1**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의 치사율  
및 사망률 추이:  
2013~2023년



주: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사망률"은 사망자와 부상자 수 합계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http://taas.koroad.or.kr>)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관련 규제)「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 정책 제언

- (자격요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정하되, 결격사유별로 자격정지 등의 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자격시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로 갖춰야 할 지식과 운전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실기시험은 어린이의 행동 특성 등을 이해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정기검사)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에 대한 기준은 전문가들의 연구 또는 자문,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

7) 이미연 예산정책연구관(국회예산정책처)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171~194 참고

##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sup>8)</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생성AI(Generative AI)가 경제와 사회의 판도를 바꾸는 변화의 동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 산업과 사회에 적용되어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창작 방식의 변화와 저작권 이슈의 부상) 창작자들이 생성AI를 활용해 과거에 시도해 보지 못했던 웹툰, 디지털 음원 생성, 디지털 출판, 디자인, 코딩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생성AI가 창작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성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미국 저작권청은 1) 인간에 의해 창작된 독창적인 저작물만을 등록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2) 미드저니를 사용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얻는 과정은 인간 예술가, 작가 또는 사진가의 과정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생성AI의 학습데이터 저작권과 공정이용) 초거대 AI 기반의 생성 AI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면서 AI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음. SW 프로그램 생성 관련 분쟁뿐만 아니라, 디지털 음원 및 뉴스 분야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 정책 제언

- (생태계 상생) 1) 구글, 오픈AI 등 7개 기업이 미국 정부와 AI 기술로 작성한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넣고 보안기술 개발에도 투자하는 등 이용자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고, 2) 유튜브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음악 원칙에는 AI가 이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음악 파트너와 함께 책임감 있게 생태계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으며, 3) 어도비도 자사의 생성AI 도구인 피어플라이로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료가 청구되면 대신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사업자 자율규제에 기반한 생태계 상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술 조치) 1) 저작권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작가의 스타일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으며, 2) 최근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은 특정 작가의 풍으로 그려달라는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를 반영하여 그려줌
  - 건전한 생성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법·제도 개선) 생성AI로 야기될 저작권 이슈는 AI 생성물을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할지 공유의 영역에 둘 것인지의 판단, 창작 분야의 특성, 창작자의 프롬프트를 활용한 창조적 개입 증명, 대규모 학습데이터의 공정이용 판단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들은 자국의 AI 경쟁력과 AI 주권 확보,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8) 이승환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195~218 참고

##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sup>9)</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농촌 청년 현황) 2000~2020년 동안 총인구는 584만 명(12.7%)이 증가하였으나, 청년 인구는 235만 명 감소(-13.8%)하였는데, 이 기간 청년 인구 변화율은 농촌이 -18.5%로 도시(-12.9%)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음

표 7 농촌과 도시의 청년 인구 변화 동향: 2000~2020년

(단위: 명, %)

| 구분 | 2000년      | 2010년      | 2015년      | 2020년      | 변화율    |        |        |
|----|------------|------------|------------|------------|--------|--------|--------|
|    |            |            |            |            | 00~20년 | 10~15년 | 15~20년 |
| 전국 | 17,070,121 | 15,066,043 | 15,216,963 | 14,716,881 | -13.8  | 1.0    | -3.3   |
| 도시 | 14,226,402 | 12,947,011 | 12,834,915 | 12,398,181 | -12.9  | -0.9   | -3.4   |
| 농촌 | 2,843,719  | 2,119,032  | 2,382,048  | 2,318,700  | -18.5  | 12.4   | -2.7   |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 (농촌 청년의 경제생활) 청년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농촌이 도시보다 낮은 반면, 일자리 만족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지역 청년 간의 직업 선택 요인 및 일·가정 중시 경향성의 차이에서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농촌 청년의 주거와 복지 생활) 주거 면적은 농촌이 도시보다 넓으나 주거 비용은 적게 나타났고, 청년 가구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더 높게, 그리고 주거환경 만족도는 도시가 농촌보다 높게 나타남
- (농촌 청년의 문화·사회 생활) 여가가 삶의 필수라는 인식과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문화예술행사 참여 빈도는 농촌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정책 제언

- (생활여건) 도시와는 다른 농촌 생활의 장점으로 적은 생활비, 주거 비용, 좋은 주택 여건, 자연환경 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 (근로·주거) 원격근무 지원, 농촌 정착 초기 생활비와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 지원 및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게 다양한 분야의 취·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교통·문화) 스마트한 농촌 건설을 통해 농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촌의 삶의 질 관련 각종 서비스의 수준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 역량 함양과 더불어 문화·여가 접근성과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9) 마상진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219~248 참고

##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형 에너지시스템<sup>10)</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국제협약) 기후변화협약의 출발점으로 1992년 5월 UN은 선진국과 비선진국 간의 의무에 차이를 두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일본에서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6대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감축의무 국가 및 감축목표를 명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파리협정을 맺고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를 수립하였음
- (국내대응)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부도 2021년에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하며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zero)으로 낮추는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함
- (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위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고, “에너지전환”은 직접배출이 0(zero)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기술이슈 1: 배전단 아래에 위치한 발전원 출력 계측) 태양광 등 제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배전단 근처에 대량으로 설치되면 이들에 대한 출력 정보, 전력 조류, 전압 변화에 대한 실시간 관측과 제어가 전력시스템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해짐
- (기술이슈 2: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관성에너지 부족) 재생에너지는 전기 출력을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성에너지가 없어 주파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인위적 조치가 불가함
- (기술이슈 3: 에너지저장 기술)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수일 동안 사용할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ESS(Energy Storage System)를 최대전력의 수배의 용량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정책 제언

- (전력계통 전환) 1) 직류와 교류의 공존을 위한 전력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2) 직류발전의 교류발전 모방 기술 개발, 3) 미래 양방향 송·배전망 구축: 송·배전망 제약의 해소가 필요함
- (전력시스템과 에너지시스템의 통합) 잉여 전력을 이용한 수소 및 열 생산으로 ESS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고, 이 대체비용이 ESS 도입 비용보다 낮다면 에너지시스템 통합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임.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수소 또는 열로 전환하여 다른 에너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이 필요함
- (미래 기술을 고려한 시장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1) 적정 용량의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기술을 보급하고, 2) 기술 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3) 사업자들이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다시 방전할 때 어느 발전기가 방전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책정될 필요가 있음

10) 유재국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249~278 참고

## 11.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사법적 접근법에 대한 주요국 사례 및 향후 과제<sup>11)</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전체 마약류 사범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 늘어났으며,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비율에서 마약류 범죄(36.3%)가 절도(50.0%) 다음으로 높음
- 주요국에서는 형사법적 처벌보다는 치료적 사법의 일환으로 치료재활프로그램 및 예방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 (미국) 마약류 사범을 환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치료적 교정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단순히 투약·흡연·섭취를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비폭력적 중독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 재판 과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임
- (영국) 영국의 마약류 치료 및 검사 제도의 목적은 마약 사용의 중단보다는 마약의 해악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으며, 마약 중독이라는 문제를 개별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정책, 주거, 가족, 보건 차원에서 통합하여 해결하고자 함
- (캐나다) 가급적 약물 처방을 지양하고 행동 및 심리상담 위주로 관리하며, 출소 6개월 전부터 치료팀 회의를 통해 수형자가 출소 후 지역사회로 이전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 정책 제언

- (치료·재활 통합관리) 치료감호처분이나 치료보호명령제도를 통해 마약을 소지한 비폭력적 중독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 이후 이행을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활용이 잘 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 주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치료병원 및 재활센터 증설을 통해 치료적 처우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해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오남용 차단) 대부분의 마약 오남용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처방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통해 발생하므로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을 통해 합법으로 환자에게 처방한 약이라 할지라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 마약 중독이나 사망의 위험이 일어날 수 있음
  - 마약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입원환자 마약류 처방에 대한 진료기록부 질병기호 및 외래처방을 위한 처방전상 질병기호 기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치료적 사법) 단순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사법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법적 제도나 인프라 등은 여전히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강력한 치료 및 재활, 추후 관리와 함께 민간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사범이 출소하거나,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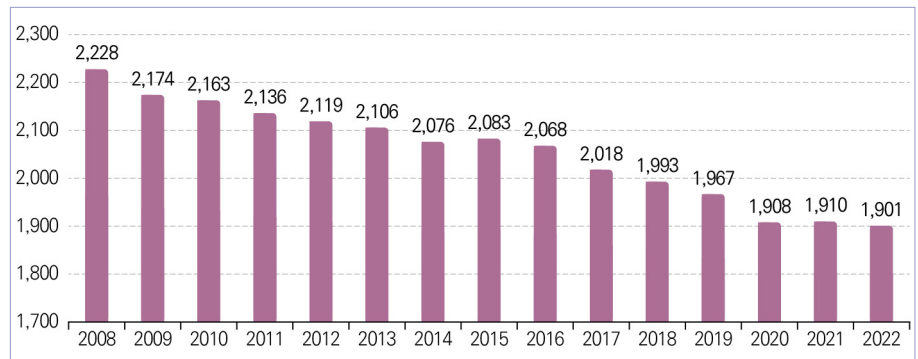
11) 김은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279~298 참고

## 12. 환경노동위원회: 미래사회의 변화와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sup>12)</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근로시간 법제도는 개인의 일·생활 균형을 비롯해 돌봄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재생산 양식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며, 노동자 삶 전반을 좌우하는 미래의제로 부상하고 있음
- 2008년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28시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장시간 노동 국가였으나, 이후 꾸준히 시간이 줄어들었고 2022년 기준 1,901시간에 이르고 있음

**그림 2** 한국의 근로시간  
변화:  
2008~2022년



자료: OECD(2023).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 (근로시간 규율)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작업장과 가정, 근로시간과 개인 시간의 엄밀한 분리와 경계를 토대로 하는 현재 근로시간 규율구조로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스마트 기술이 확산되고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일터와 삶 사이에는 공간의 경계뿐 아니라, 근로시간과 자유시간의 경계도 불명확해짐
- (주 52시간제 상한제) 법정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간의 전반적 단축으로 이어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는 한편,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함
-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근로시간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 비록 노사 합의 조항과 법정 휴게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 사용자의 재량권이 확대되며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존재함

### ■ 정책 제언

- (근로시간 관련 법제 논의) 1)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현행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2) 단순히 근로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새로운 보상체계 방안 모색, 3) 기업의 원하청구조 개선, 영세한 자영업에 정책 등 산업정책과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의 장기적 논의 전망) 근로시간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과 규제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문제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12) 정혜윤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299~322 참고

### 13.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sup>13)</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스마트 건설기술을 위한 디지털화) 빌딩 정보 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자동 건설기계, 로봇, OSC(Off-Site Construction)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이용한 건설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관리 사각지대의 안전관리) 기후변화로 폭우,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노후 인프라를 포함한 기반시설 안전확보가 중요하므로, 안전관리 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스마트 건설안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 스마트 건설기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인 BIM으로 2D 문서 기반의 데이터에서 3D 디지털 모델로 전환하여 각 전문 분야의 협업 효율을 향상할 수 있고,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해체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단절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건축물 생애주기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그림 3** 스마트 건설기술을 이용한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

#### ■ 정책 제언

- (BIM 활성화) 민간 분야에서의 발주 물량이 많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및 BIM 사용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담당자 교육) 향후 BIM 모델로 각종 심의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평가자 및 담당 공무원이 BIM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새로운 건축 프로세스에 대한 원활한 행정절차를 위해 관련 담당자 교육이 필요함
- (안전관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해체 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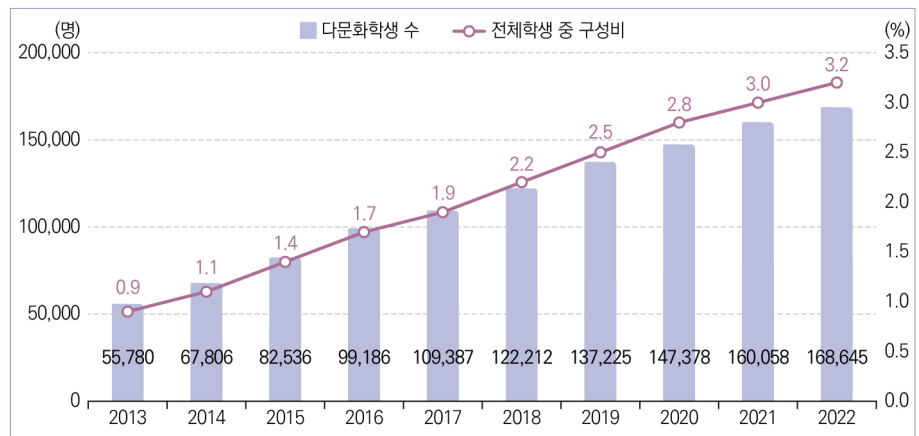
13) 채지용 수석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323~344 참고

#### 14. 여성가족위원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변화와 미래 과제<sup>14)</sup>

##### ■ 논의 배경 및 쟁점

-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학령기 다문화학생 수는 2013년 55,780명 대비 2022년에는 168,645명으로 그 수가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구성비는 2013년 0.9%에서 2022년 3.2%까지 확대되었음

**그림 4** 다문화학생 수 및 비중:  
2013~2022년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3)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변화 필요성) 청소년 일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주배경 또는 다문화 인구에 대한 낙인 효과를 저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주배경이라는 특성 자체에서 기인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세심한 정책 개발을 통해 해당 어려움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정책 제언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전달체계 재정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중앙 단위 전달체계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기에는 예산과 인력 규모가 매우 작으며, 시도 단위의 전달체계 또한 갖추고 있지 않음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 증원을 통한 운영 규모 확대 또는 현재 전국 단위의 가족센터를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 정체성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제고)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미비하고, 이주배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담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인력도 극소수임
  -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술적 근거에 기반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더불어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 규모를 고려한 사업 예산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14) 이지연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작성분으로, 상세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보고서 p.345~361 참고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http://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http://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